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은행

2. 조치일 : 2021. 8. 31.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개선사항 : 4건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사모펀드 판매 시 투자권유 고객수 관리체계 불합리

사모펀드 판매 시 투자권유 고객수가 49인을 넘지 못하도록 전산 통제하고 있지 않아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가입의사가 없거나 가입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고객에게 추가로 투자 권유하여 결과적으로 50인 이상에게 투자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모상품의 경우 투자권유 대상 고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등 50인 이상에게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람

<관계법규>
1.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 제7항 및 제8항

(2)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담당자 전산인자 체계 불합리

금융투자상품 판매 서류상 권유자(판매자), 전산입력자(OP), 실명확인자 등 각각의 업무처리별 담당자 정보가 전산인자 내용과 수기 기재사항 간에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각각의 업무별로 실질적인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산인자 되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전산인자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미흡

금융소비자보호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기 전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신상품 숙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보호부서가 협의의견을 '적정'으로 승인하고 있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 [예시] A펀드 : 2018.9.13. 출시 후 2018.9.14. 협의 완료
B펀드 : 2019.6.3. 출시 후 2019.6.4. 협의 완료

** 점검 체크리스트상 신규 상품 출시 3일 전까지 판매 직원이 상품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

신규 금융투자상품 출시 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상품 내용 및 위험, 판매 절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매 직원이 상품 관련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부의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4) 펀드 출시 사전검토기준 운영체계 불합리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를 상품설명서로 이용하고 있어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판매사로서 설명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본점 실무부서 차원의 사전검토가 중요함에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전검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규 펀드 출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가표가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어 심의의 실효성 확보가 의문시되며,

펀드 출시 최종의사결정시 전결권자에게 약식보고만 이루어지고 있어 상품의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결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펀드 신상품 출시를 위한 사전검토, 심의 및 출시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심의기구의 심의 기준, 전결권자에 대한 보고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람